

보도	필요	·	불
방법	자료제공	·	직접
과장			

기안용지

(전화: 731-6747)

시행장	
특별취급	

분류기호 문서번호	시설30312-6
보존기간	영구·준영구 10.5.3.1.
수신처 보존기간	준영구
시행일자	89. 1. 12

시 장	
731 6747 1/12	

보조기관	도시계획국장 전 결 시설계획과장 시설계획1계장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협조기관
법무담당관
협조통계관 행정의장

문서통계	검정 1989. 1. 12 통계관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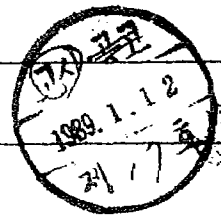
기안책임자	박필용 (경북도)
-------	-----------

발송인
시 장

경유수신참조	각안참조
--------	------

제목	도시계획시설(운동장)변경 결정
----	------------------

(제1안) : 내부결재



1. 도정30310-33048('88.12.29)호와 관련입니다.
2. 위호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성북구 종암동 산2-27일대의 도시계획시설(운동장)

변경결정 요청이 있어 검토한 바, 서울특별시 고시 제880호('87.12. 9)호 변경 결정 면적이 지적공부상의 실제 면적과 상이하여 변경 결정 요청한 사항으로,

3. 도시계획법 제12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6조 및 제7조의2의 규정에 따라 별첨과 같이 변경 결정 코자 합니다.

- 첨부 : 1) 관련서류 1건.
2) 고시문 1부. 끝.

(제2안)

수신 : 건설부장관 (도시시설계획과장)

제목 : 같음.

1. 우천시 도시계획시설(운동장)을 별첨과 같이 변경 결정 하였기 보고 합니다.

첨부 : 고시문 사본 및 도면 각1부. 끝.

(제3안)

수신 : 총무처장관

제목 : 관보게재 의뢰

1. 다음과 같이 관보게재 의뢰 합니다.

가. 게재구분 : 고시.

나. 게재건명 : 도시계획시설(운동장)변경 결정

다. 법적근거 : 도시계획법 제12조.

마. 게재내용 : 별첨.

첨부 : 고시문 사본 2부. 끝.

(제4안)

수신 : 성북구청장 (도시정비과장)

제목 : 같음.

1. 도정30310-33048('88.12.29)호와 관련임.

2. 위호로 요청한 종암동 산2-27일대의 도시계획시설(운동장)을 별첨과 같이

변경 결정 하였기 통보하니 도시계획법 제13조에 의한 지적승인 하기 바라며,

3. 본 도시계획시설(운동장)은 비행정청의 출원에 의해 결정된 시설임을 감안

조속히 사업시행 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.

첨부 : 고시문 사본 및 도면 1부. 끝.

(계5안)

수신 : 수신처참조 - 2/6

발신 : 과장

제목 : 같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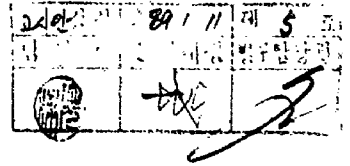
1. 우리시 도시계획시설(운동장)을 별첨과 같이 변경 결정 하였기 통보하오니

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

첨부 : 고시문 사본 및 도면 1부. 끝.

수신처 : 도시계획과장, 건전생활과장.

고 시



서울특별시 고시 제 호

도시계획시설(운동장)변경 결정

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880호('87.12. 9)로 ^{변경}결정된 우천시 도시계획 시설(운동장)을 도시계획법 제12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6조 및 제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 하였기 이를 고시 합니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와 성북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1989. 1. 12.

서울특별시 장

가. 도시계획시설(운동장)변경 결정 조서

구분	시설명	위 치	규모(m ²)	비 고
기정	운동장	성북구 종암동 산2-27일대	111,600	
변경	"	"	111,553	감)47m ²

나. 도면 :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와 성북구청 비치
도면과 같음. 끝.

도시계획시설(공동묘지)개발계획
A=11600M² → 11553M²

安岩洞五街

공동묘지

수도용지

